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2019. 11. 29.)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19-152
----------	--------

2019. 12. 29.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의약과)
- 나. 제 출 일 : 2019. 11. 15.
- 다. 회 부 일 : 2019. 11. 18.

2. 제출이유

체납처분의 법률적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법제처 협업과제(조례) 정비요청에 따라 삭제하고 행정여건에 맞는 용어정비를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용어상 낙인효과 제거를 위하여 ‘저소득층 아동’을 ‘아동’으로 변경
(안 제1조)
- 나. 지원대상의 신설 확대에 따라 아동 치과주치의 대상 범위 확대
(안 제2조제3항)
- 다. 종전의 정서치료 서비스 지원 중지에 따른 사업내용 삭제(안 제8조)
- 라.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 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삭제(안 제14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구강보건법」, 「보건의료법」, 「학교보건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필요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 : 2019. 10. 10.~ 10. 30.(의견 없음)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배경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구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에 위반 소지가 있는 제34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대상 및 사업범위의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등 행정여건 변화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나. 주요 조문 검토

- ‘저소득층’이라는 용어의 낙인효과해소 목적으로 서울시 치과주치의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삭제(안 제1조)
- 학생·아동의 포괄적 구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특수학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까지 대상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항)
- 2013년부터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내용중 ‘정서치료사업’ 중단에 따른 삭제(안 제8조)

-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체납처분토록 한 강제징수제도 규정을 지방자치법 위반소지가 있어 삭제(안 제14조제2항)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징수 하는 것으로,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위임 없이 조례에 담고 있어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삭제가 타당하고,
- ‘저소득층’이라는 용어는 법적·제도적으로 규정된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학적 개념으로 사회제도나 규범을 근거로 특정인을 이탈자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결국 범죄인이 된다는 낙인이론에 유래한 것으로서 사회적 위화감 해소 차원으로 바람직함.
- 기타 치과주치의 사업 중 종전의 정서치료 서비스 삭제와 특수학교 및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대상범위 확대는 ‘서울시 아동·청소년 치과 주치의 사업안내’에 따라 삭제 및 수정된 사항으로 다소 시의성은 떨어지나 법령상 문제는 없음.
- 다만, 사업대상 확대에 따른 대상인원 조사와 비용추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시비 매칭사업임을 고려하여 향후 예산증가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구분	시설수	합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비고
지역아동센터	11개소	319명	188명	96명	35명	
협의체 승인 시설	4개소	121명	81명	28명	12명	
특수학교 및 장애인 시설	1개소	128명	51명	31명	46명	

<표1.관내 지원 시설명 인원 현황>

- 또한, 신설 조문인 안 제8조는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 범위에 대한 사항을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한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역협의체에서 심의한 사항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별도로 규정하였음.
- 심의 의결사항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은 없어 보이나, 조례에서 담고 있는 지역협의체의 기능이 의료지원의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 방법 등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의결권을 가진 위원회로 보이나, 이를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행정관청의 의사를 결정하기 전 임의적 위원회로 판단하여 신설된 조항으로 보임.

따라서, 의사결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의 지역협의체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협의체의 순기능 제고 차원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 령]

「구강보건법」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둔다. <개정 2015. 5. 18.>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인력,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3조(구강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질환(口腔疾患)의 예방 및 치료와 구강건강에 관한 관리 등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제3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생